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 위반시 면직 건의 등>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31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 신설 등(안 제9조의2 신설 등) ...	3
2. 결격사유 신설(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10
3. 겸직금지 대상에 비영리 목적 추가(안 제9조)	13
4. 개정안 부칙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11. 25.

3. 회 부 일 :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그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는 위원 자격의 적격성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여 국가교

육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
임.

Ⅲ. 검토의견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 신설 등(안 제9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안 제9조의2), 금지행위 위반을 면직(또는 해촉) 사유로 추가하며(안 제6조제2항제3호), 위원장등이 대통령에게 면직(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3항), 위원장의 면직 건의를 위해서 상임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신분보장) ① (생략)	제6조(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제9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3. (생략)

<신설>

<신설>

를 위반한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위원이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지행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3. 「자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자격을 갖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그 외의 과정에서 강사 등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행위. 다만, 임명권자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서 신설> ② ~ ⑥ (생략)	<u>또는 위촉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5조(회의) ① ----- ----- ----- ----- --. <u>다만,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장 면직 건의를 위한 회의 소집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② ~ ⑥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1) 금지행위 및 면직(또는 해촉) 사유 신설

-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경우 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 ③ 「자격기본법¹⁾」 상 민간자격을 갖고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그 외의 과정에서 강사 등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행위(단,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 시 면직(또는 해촉) 사유로 하려는 것임.

1)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국가 교육의 기본바탕이 되는 것으로²⁾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정치활동에 관하여는 행위의 경우 현행법 제9조제3항³⁾에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바, 동일한 내용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민간자격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등에서 강사등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현직 교원이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경우 수당 외 별도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비상임위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 상 위원 요건]

-
- 2)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와 관련된 사무를 소관으로 하고 있음.
- 3)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겸직금지 등)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4) 현재 교육위원회는 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13206)이 회부되어 계류되어 있음.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 끝으로, 개정안은 금지행위 위반을 위원의 면직(또는 해촉) 사유로 신설하려고 하나, 현행법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등 사유로 이미 규정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치활동 관여 금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 금지의 경우 현행법과 중복 입법이 우려되고, 현행법은 위원 결격 사유로 현직 교사·교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상임위원의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음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며, 면직등 사유 신설

5) 「국가교육위원회법」 제6조(신분보장)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 관련하여 중복입법이므로 신중 검토 의견임.

2) 면직(또는 해촉) 절차 마련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①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②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면직 또는 해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장이 면직 대상인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 또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데⁶⁾, 개정안은 위원장을 면직하도록 건의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단서).
-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 절차등에 대하여 시행령 등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대통령에게 위원의 면직등을 건의할 수 있게 되는바, 면직등이 요구되는 위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6)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다만, 개정안은 위원장의 면직 건의와 관련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교육부와 별도의 기관이고, 상임위원에 대한 근거 조항도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마련하고 있는바⁷⁾, 위원장을 대신할 상임위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법상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은 부존재하고, 국교위법에 따라 임명되는 상임위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상임위원”을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 1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7)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결격사유 신설(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략) <u><신설></u>	제7조(결격사유)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 이 경우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고⁸⁾⁹⁾,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은 정치적·파당

8)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9)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판시하였음(헌재 2014.8.28. 2011헌바32).

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도록 하는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¹⁰⁾.

□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¹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원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음¹²⁾.

□ 개정안은 이와 유사한 취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의 정치성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교육, 사회, 법, 정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론적 논란이 다층적으로 교차되는 쟁점사항인 것으로 보이며¹³⁾, 범위 설정시 이에 대한 다층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0)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위 설정 후에도 논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3) 배소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p44

3. 겸직금지 대상에 비영리 목적 추가(안 제9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사항으로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u>영리</u> 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u>업무</u>	제9조(겸직금지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영리 또는 비영리</u> 를----- -----업무. <u>다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u>영리</u> 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② ----- <u>영리 또는 비영리</u> 를----- -----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재직 중 ①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를 겸직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업무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현직 교사, 교수 및 교육 관련 기관의 관계자(교육부차관과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등) 등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데¹⁴⁾, 이들의 경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법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법」 상 위원 요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교</u>(「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u>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u>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u>3급 이상 공무원</u>(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u>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4.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
|---|

14) 교육부차관과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등

- 따라서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이 부여된 경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비상임위원은 비상근으로,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까지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이 긴급한 경우 또는 부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3개월, 대통령령의 정비가 수반되는 법률의 경우는 6개월,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¹⁵⁾,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위임규정이 있는바, 안 부칙과 같은 유예기간이 필요해 보임¹⁶⁾.

문 의 처

02)6788-5186

15)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821